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18호(2015.6.29.)

2. 위 근거를 통해,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17호, 2015. 6. 29.)」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·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개정 사항

1) 신설 : 1개 항목

[114] Polmacoxib 경구제(품명: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)

2) 변경 : 8개 항목

[일반원칙] 항진균제

[131] Dexamethasone 700 μ g 이식제(품명: 오저덱스이식제 700 μ g)

[222] Erdosteine(품명: 엘도스캡셀 등)

[333] Apixaban 경구제(품명: 엘리퀴스정 2.5밀리그램, 5밀리그램)

[333] Dabigatran 경구제(품명: 프라닥사캡슐 110, 150mg)

[333] Rivaroxaban 경구제(품명: 자렐토정 2.5밀리그램, 10밀리그램, 15밀리그램, 20밀리그램)

[421] Interferon α -2a 주사제(품명: 인터맥스 알파주 등)

[421] Interferon α -2b 주사제(품명: 레아페론주 등)

붙임 : 고시문 및 변경대비표 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273 (2015.06.29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